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45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최수진·서범수·김정재
고동진·권영세·신성범
김예지·조정훈·안철수
구자근·강선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더라도 이를 독점적 공급처인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단가 협상에 적기 반영하지 못해 한계기업으로 내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최소한의 집단 협상력을 확보하고, 원가 변동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효적 통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협의 의무를 강제하고 거부 시 제

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재계의 강한 마찰열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국내 소부장 조달 축소 및 수입선 다변화 등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러한 ‘채찍’ 위주의 강제 조항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사법적 소송전이나 대형 로펌을 통한 장기 회피 대응을 유발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장기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고사하는 ‘갈등의 사법화’ 장벽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및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에 동참하는 대기업(원사업자)에 대해 확실한 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규제와 의무 강제가 아닌 확실한 인센티브를 법률로써 보장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기 세무조사 및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유예 등 대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실리적 우대 패키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가 아닌 시장친화적인 자율적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양질의 국내 공급망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한다.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로 하고,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거래조건 협의 우수 대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합의에 도달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에 현저한 기여를 한 대기업(이하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2.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사의 유예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나.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3. 그 밖에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의 선정 기준·절차, 포상·지원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의 기준·절차, 조사 유예의 방법·기간, 우대 조치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 및 그 밖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7항 본문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 ----- ----- ----- ----- ----- ----- ----- ----- ----- . 이 경우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생략)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	6. 제20조의6-----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신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거래조건 협의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의 거래조건 협

의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합의

에 도달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반

성장에 현저한 기여를 한 대기

업(이하 “상생협력 우수 대기

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포

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우대 조

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

수 산정 시 가점 부여

2.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사의

유예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u>나.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u> <u>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u> <u>3. 그 밖에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u> <u>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선정 기준·절차, 포상·지원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의 기준·절차, 조사 유예의 방법·기간, 우대 조치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 및 그 밖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0조의4</u>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생략)	<u>제20조의5</u>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현행 제20조의4와 같음)
<u>제20조의5</u>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설치 등) (생략)	<u>제20조의6</u>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설치 등) (현행 제20조의5와 같음)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
사 지원) (생 략)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
⑥ (생 략)

⑦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4제3
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
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
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
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
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
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20조의7(상생금융 우수금융회
사 지원) (현행 제20조의6과 같
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0조의5제3
항-----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
조의5제3항-----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
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 심의
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부장관
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
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
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
--제20조의5제3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20조의4제3항</u>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 <u>제20조의5제3항</u> -----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